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661

발의연월일: 2021. 9. 24.

발 의 자:위성곤·김성환·김원이

소병철・양정숙・윤재갑

윤준병・이개호・조정훈

최인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 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남방큰돌고래와 같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양포유동물 중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의 경우 세계적인 개체수 감소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의해 준위협종으로 분류되었음에도, 남방큰돌고래관찰을 위한 관광선박의 접근 등으로 인해 해당 종의 생활과 서식지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남방큰돌고래 선박 관찰가이드'를 작성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위반 시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없어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포유동물의 국내 연안 주요 서식지 파악

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포유동물 서식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 시 해양 보호생물의 서식지를 교란하지 못하도록 해양보호생물의 관찰·관광 활동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및 방법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으로써 해양보호생물 및 해양생태계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편,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법률상 부담금의 내용이므로, 해당 명칭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2(회유성해양동물 등의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 제목 "(해양보호생물 관련 광고제한)"을 "(해양보호생물 관련 광고 및 관찰활동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을 하려는 때에는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족관의 해양보호생물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제2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의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9조의 제목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각각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또는"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으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을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을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으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으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으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일부"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일부"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일부"를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현대계보전병대계보전현대기보전현대기보전함대기보전현대기보전

제49조의2의 제목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각각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를 "(해양생태계

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각각 "해양생태계보전부담 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을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생태계보전 협력금"을 각각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60조의2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 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하는 행위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6조의2(회유성해양동물 등의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회
	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
	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
	<u>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해양보호생물 관련 광고제	제22조(해양보호생물 관련 광고
<u>한)</u> (생 략)	및 관찰활동의 제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의 관
	찰이나 관광 활동을 하려는 때
	에는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
	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족
	관의 해양보호생물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u> <신 설></u>	③ 제2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
	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의 세부
	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 제49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① 저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한다.
 - ②제1항에 따른 <u>해양생태계보</u> 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 업은 다음과 같다.
 - 1. ~ 4. (생략)
 - ③제1항에 따른 <u>해양생태계보</u> 전협력금은 생태계의 훼손면적 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 계수를 곱하여 산정·부과한다. 다만, 국방목적의 사업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는 <u>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u>을 감 면할 수 있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u>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u>의 부과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정하여 고시한다.
세49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①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②해양생태계보전
부담금
1. ~ 4. (현행과 같음)
③해양생태계보전
부담금
<u>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u>
4
<u>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u>

⑤제1항에 따른 <u>해양생태계보</u> 전협력금의 징수절차·감면기 준·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 역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u>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u>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 로 납입하여야 한다.

⑦해양수산부장관은 제60조제1 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u>해양</u> 생태계보전협력금 또는 가산금 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u>해양생태계보</u> 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을 해당 특별시·광역시·특 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하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 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⑧해양수산부장관은 <u>해양생태</u> 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⑤해양생태계보전
부담금
6
<u>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u>
7
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해양생태계보
전부담금 및
⑧ 해양생태 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 또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 한 자로부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로서 해양생태계보 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 인을 얻어 대체해양생태계의 조 성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태계 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u>해양생태계보</u> 전협력금의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

- ⑨제8항에 따른 승인 및 <u>해양생</u> <u>태계보전협력금</u>의 반환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9조의2(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저의 용도)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51 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1. ~ 8. (생략)
- 제50조(사업 인·허가등의 통보) 저 ①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
한 자로부터
해양생태계보
전부담금의 반환
<u>해양생태계보</u>
전부담금의 일부
<u> ⑨ 해양생</u>
태계보전부담금
세49조의2 <u>(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u>
의 용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1. ~ 8. (현행과 같음)
에50조(사업 인·허가등의 통보)
①해양생

대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 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및 사업의 규모 등을 해양수산부장 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내에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한 날부터 3개월로 한다.

③ (생 략)

제51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전쟁정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9조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 협력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해양생태 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u> 대계보전부담금</u>
2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③ (현행과 같음)
세51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u>강제징수)</u> ①
해양생태계보전
부담금
<u>해양생</u>
태계보전부담금
·.

- 1.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 내에 <u>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u> 납부하는 경우: <u>해양생태계보</u> 전협력금의 100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
- 2. 제1호 외의 경우: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②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기한까지 해양생태계보전협 력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60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 산부장관은 제49조에 따른 <u>해양</u>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 수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 제65조(과태료) ① (생 략)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게는 2백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4. (생 략) <신 설>

1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u>해양생태계보</u>		
전부담금의		
2 <u>해양생태계</u>		
<u>보전부담금</u>		
2)		
해양생태계보전부		
담금		
,		
제60조의2(규제의 재검토)		
생태계보전부담금		
제6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2)		
1. ~ 4. (현행과 같음)		
5.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		

	하여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
	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하는 행위를 한 자
<u>5.</u> (생 략)	<u>6.</u> (현행 제5호와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